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시행 2025. 7. 14.] [교육부고시 제2025-18호, 2025. 7. 14.,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지정번호	위탁기관	주소	대표자 성명
제6호	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28, 성일빌딩 2층	구광모
제7호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대로471, 4층	황경욱
제9호	(주식회사)돌봄이앤씨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510호	박영진
제10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67-4 3·F층	조명연

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 준수사항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시간 준수
 - ※ 최초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 4시간 이상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실시 후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영요령 등 준수

부칙 <제2025-18호, 2025. 7.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